

1. 방문요양/방문목욕 한도액 및 이용수가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이상	16,630	150분이상	48,250
60분이상	24,120	180분이상	54,320
90분이상	32,510	210분이상	60,530
120분이상	41,380	240분이상	66,770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차량이용(차량내)	차량이용(가정내)	차량미이용
84,670	76,340	47,670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이상	16,630	150분이상	48,250
60분이상	24,120	180분이상	54,320
90분이상	32,510	210분이상	60,530
120분이상	41,380	240분이상	66,770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차량이용(차량내)	차량이용(가정내)	차량미이용
84,670	76,340	47,670

2.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부담금

-일반: 요양수가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한다.

-감경: 소득기준별 40%감경대상자 와 60%감경대상자에 따라 각각 9%와 6%의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기초: 본인부담금은 0%로 요양수가의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